

문서번호	보건기획과-3193
결재일자	2016.3.1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 무 관	보건기획팀장	보건기획과장	동작구보건소 동장
백진아	김필순	김연순	03/15 모현희
협 조			

장기기증등 활성화계획

-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자 30명이상 등록
- 장기등기증희망 접수 및 등록창구 운영
- 장기등기증희망 홍보 실시(5회 이상)
 - 장기등 기증 캠페인 실시
 - 보건소 각종 사업시 장기기증 홍보

장기기증등 활성화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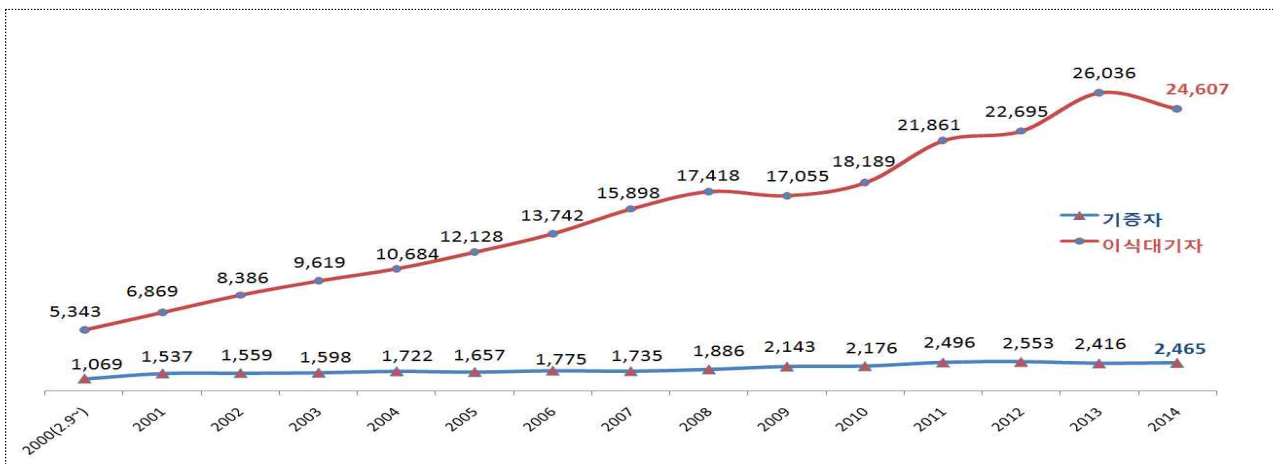
장기등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함께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『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』 제6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-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』 (2009.9.15)

II 현 황

- 장기기증 및 이식현황
 - (기증 및 이식의 수급불균형 심화) 이식대기자의 압도적 증가추세로 이식 수요와 공급간 수급불균형 심화
 - '05년~'14년까지 지난 10년간 이식대기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8.2%인 반면, 장기등 기증자의 경우 4.5% 증가에 그침
 - * '14.12월 이식대기자 24,607명, 기증자 2,465명으로 약 10배 차이



- (기증희망등록현황) '09년 故김수환 추기경 각막기증, '13년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 및 민법개정*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증가하였으나, 그 이후 주춤한 상황

*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 추이 : 185,046('09년) → 124,378('10년) → 94,921('11년) → 88,243('12년) → 160,038('13년) → 110,620 ('14년)

* 성년 기준 연령 변경(20세→19세)으로 인한 기증희망가능 연령 확대(민법 개정, '13.7월)

III

추진방향

- 장기등기증 희망자에 대한 등록업무 수행
- 장기등 기증의 필요성과 나눔의 사랑을 적극 홍보하여 스스로 장기등 기증 등록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

- “장기등” :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·간장·췌장·심장·폐·골수·각막·췌도·소장을 말함
- “장기등기증자” :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
- “장기등기증희망자” : 장래에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자를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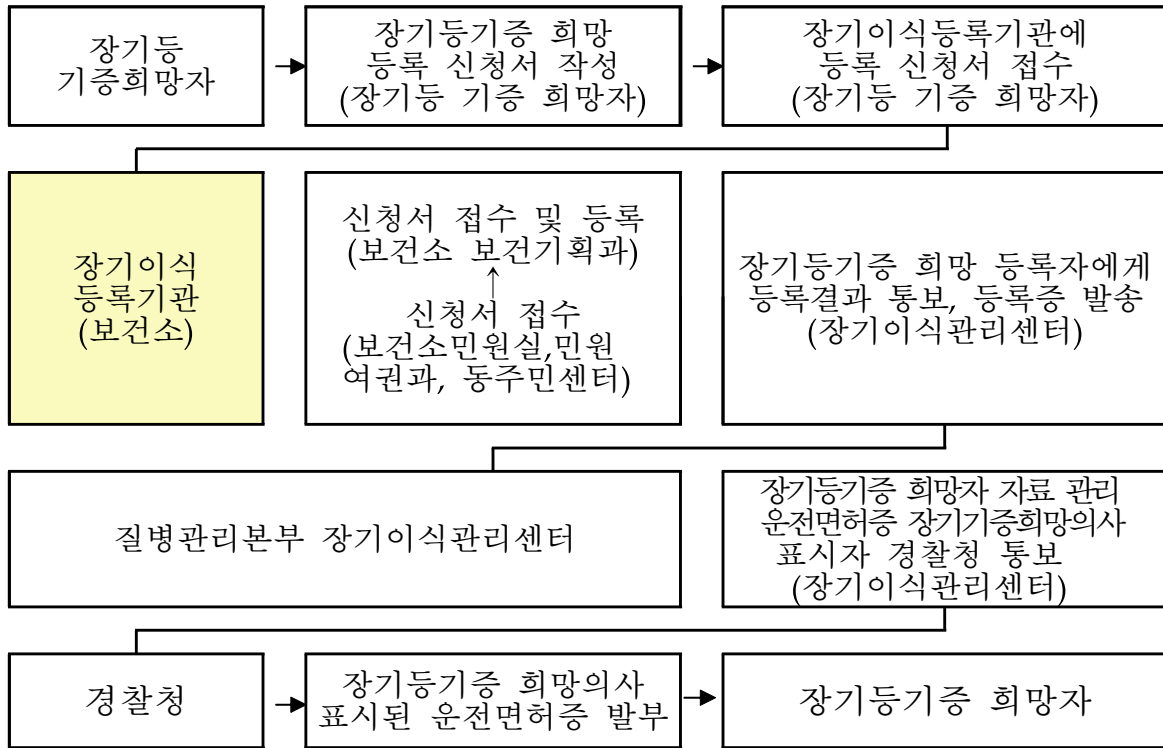
IV

우리구 장기등 및 조직 기증 등록기관 지정현황

- 2009. 9. 15 :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
- 2009. 9. 29 : 장기등 기증등록기관 지정
- 2009.11. 02 :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업무개시
- 2009.12. 10 :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구성
- 2015. 2. 05 : 조직기증등록기관 지정

V

장기등기증 희망 등록 절차 개요도



VI

2015년도 추진실적

추진실적

○ 장기기증 희망현황

구분 (명)	2013년	2014년	2015년	2016. 3. 10현재
동작구보건소	19	8	23	1
구로구보건소	4	3	2	·
강서구보건소	25	7	19	3
동대문구보건소	1	6	8	·
서대문구보건소	27	23	30	2
중구보건소	25	7	19	3
송파구청	53	46	26	2
영등포구보건소	1	2	·	·
중랑구보건소	·	·	23	8
양천구보건소	58	39	28	·
노원구보건소	·	58	28	·

(출처 :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)

- 장기등기증 희망 접수·등록 창구 운영 : 동작구보건소, 구청 민원여권과, 15개동 주민센터
-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(1회) : 2015. 11. 16

VII 2016년도 추진계획

목 표	장기등 기증 참여 인원 확대
추진 목표	장기등 기증 참여인원 : 전년대비 5% 향상
추진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자 30명이상 등록 ○ 장기등기증희망 접수 및 등록창구 운영 ○ 장기등기증희망 홍보 실시(5회 이상)
추진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○ 보건소 각종 사업시 장기기증 홍보
협력 기관	○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이식센터, 한국장기기증원, 동 주민센터

1. 세부사업 추진 계획

장기등 및 조직 기증 희망 접수 및 등록과정

-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신청 접수
 -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접수창구
 - ⇒ 보건소 (의약과, 민원실), 민원여권과, 15개 동주민센터
 - 접수창구 역할 : 장기등기증 희망자로부터 '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' 또는 '장기등 및 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취소신청서'를 접수한 접수창구는 신청서를 등록창구(보건소 보건기획과)로 원본 또는 팩스로 즉시 송부

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방법

- 직접 방문시 :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기증희망자 본인이 작성하게 하고 자필서명 받아 접수·등록
- 유선 요청시 :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기증희망자에게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거나,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여 기증희망자 본인이 작성한 후 다시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받아 접수·등록
- 단체 모집시 : 장기등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상의 본인 자필서명 유무 및 등록 제한자 여부를 확인 후 등록

※ 장기등기증 희망자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인정(법 제12조제1항)

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

-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
-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
-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 (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첨부시 가능)

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취소

- 장기등기증 희망등록자가 등록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장기등기증 희망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록취소 처리

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방법

- 보건소 의약과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장기등기증 희망자 등록관리시스템(<http://is.cdc.go.kr>) 접속하여 장기등기증 희망자 등록
- 등록내용
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메일, 기증형태, 등록일자
 - 운전면허증 장기등기증 희망의사표시 여부
 - 법정대리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관계(장기등기증희망자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)

VIII

2016년 예산 현황

2016년 예산 : 1,230천원 (구비 1,230천원)

사업명	예산과목	예산내역
장기등 기증 희망등록	보건기획과, 선진 보건행정 구현,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,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장려	-일반운영비 (사무관리비) : 930천원 ·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안내 홍보물 300천원 ·위원회 참석수당 630천원 -업무추진비(시책추진업무추진비) : 300천원

IX

평가계획

- 평가시기 : 사업종료 후
- 평가대상 : 장기기증 업무 전반
- 평가방법 :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

평가단계	평가지표		평가세부항목	평가결과
	합계			100
구조	계획수립 여부	사업계획서 수립	①유 ②무	10 0
	담당인력 확보		①확보 ②미확보	10 0
	장기기증관련 예산 확보		①확보 ②미확보	10 0
과정	홍보방법	1)홈페이지 2)리플렛, 책자, 소식지 3)매체(지역신문,TV 등) 4)공문발송(발송건)	①5회 이상 ②4회 이하	15 10
	기증희망자 등록 작업	희망등록신청자 전산 등록	①100% 등록 ②90~100%미만 ③90% 이하	10 5 3
	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 유무		①개최 ②미개최	10 0
	캠페인 실시 유무		①2회 이상 ②1회 ③미실시	10 7 0
결과	자체평가	자체평가 실시 여부	①유 ②무	10 0
	참여인원 확대	장기기증참여인원 확대	①50~79명등록 ②30~49명등록 ③30명이하등록	15 7 3

X

기대효과

- 장기·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관심유도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

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
	주소		
정보수신 여부	[]전자우편	[]이동전화 문자메시지	[]우편물

신청내용	기증 형태 (중복 선택 가능)	[] 장기등(신장, 간장, 췌장, 체도, 심장, 폐, 소장, 안구 등) 기증 [] 조직(뼈, 연골, 근막, 피부, 양막, 인대, 건, 심장판막, 혈관 등) 기증 [] 안구(각막) 기증	
	기증희망자 표시 여부	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? []예 []아니오 ※ 운전면허증 신규발급, 갱신,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.	
	법정대리인의 동의 (미성년자의 경우)	성명	주민등록번호
	관계	서명	

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동작구보건소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: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신청인이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※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첨 1]

장기등기증희망등록증(예시)



앞 면



뒷 면

운전면허증 장기등 기증 희망의사 표시(예시)

